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51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오선미)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재위탁(세곡햇빛어린이집 외 3개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동 입소·상담,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 관리, 조직·인사·회계 등
- 수탁재산의 관리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1.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o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함(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4호)

-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재위탁”도 의회 동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와 통제를 위해 “재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함.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위탁사무명,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함.
- 한편, 지난 7월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본 동의안에 해당 내용이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으로 제출되었음.

2. 주요 사항의 검토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민간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세곡햇빛어린이집, 연화어린이집,

청마을어린이집, 포레스트어린이집)이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임.

-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제출되었고,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보육 교사 등에 대한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향후 위탁계약서에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에 관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등〉

(2024.10월 현재)

어린이집 [인가일]	주 소	시설 현황			현위탁체 [원장]	현 위탁기간	신규 위탁기간
		정원 [현원]	교직원	연면적 [㎡]			
세 곡 햇 빛 (2014. 4. 1.)	자곡로 260	69(49)	17	435	사단법인 그린타처스 (박인선)	2020. 4. 1.~ 2025. 3. 31. (5년)	2025. 4. 1.~ 2030. 3. 31. (5년)
연 화 (1997.9.1.)	학동로 43길 17	114(67)	22	906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강민경)	2020. 9. 23.~ 2025. 9. 22. (5년)	2025. 9. 23.~ 2030. 9. 22. (5년)
청 마 을 (1993.3.6.)	양재대로 55길 10	51(38)	15	25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박지현)	2020. 9. 23.~ 2025. 9. 22. (5년)	2025. 9. 23.~ 2030. 9. 22. (5년)
포 레 스투 (2020.9.30.)	개포로 264	72(51)	17	541	사단법인 그린타처스 (김주나)	2020. 10. 1.~ 2025. 9. 30. (5년)	2025. 10. 1.~ 2030. 9. 30. (5년)

(출처: 보육지원과 자료 재구성)

나. 성과평가 관련

-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정기적으로(3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단서에 근거하여 이를 성과평가로 갈음함.
- 부서 자료 확인 결과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평가 결과 4개소 모두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으므로 평가 당시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총평을 받았음.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①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의 특성상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 ② 관계 법령과 지침에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회계관리, 보육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점, ③ 구립어린이집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되어왔고,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4개소 외에도 구립어린이집 수가 상당해 이들을 직영할 경우 행정력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3. 종합의견

- 어린이집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민간 위탁 동의 여부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
-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계 법령 등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음에도 국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이에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지도 등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1
----------	-----

제출년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의 재위탁(세곡햇빛어린이집 외 3개소)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동 입소·상담,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 관리, 조직·인사·회계 등
- 수탁재산의 관리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① 세곡햇빛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강남한양수자인(관리동)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435.76㎡
- 지원시설 : 보육실 7개, 조리실 1개, 공동놀이실 1개 등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2025. 4. 1. ~ 2030. 3.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760,509천원 [국30%, 시49%, 구21%]

· 인건비 499,455천원/ 운영비 49,784천원/ 사업비 211,27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①	인	법	정	부	담	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교직원 급여	403,607,700	53.07	교직원 제수당	17,700,000	2.32	기타 인건비	800,000	0.11	국민건강보험료	14,963,718	1.97	장기요양보험료	1,937,801	0.25	국민연금보험료	18,994,847	2.50	고용보험료	3,342,054	0.44	산재보험료	2,933,580	0.3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5,175,642	4.63	소 계			499,455,342	65.68		출	원	가	②	운	영	비		『2024년 보육사업안내』 운영비 기준	수용비 및 수수료	23,015,480	3.0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92,860	1.59	복리후생비	8,830,000	1.16	업무추진비	5,846,000	0.77	소 계			49,784,340	6.54		사	업	비	③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보육활동비	116,573,700	15.33	수익자 부담경비	62,623,000	8.23	재산 조성비	32,073,000	4.22	소 계			211,269,700	27.78		지출원가 합계(㉠=㉠+㉡+㉢)			760,509,382	100		수입원가			0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			0			위탁비용(㉠-㉡)			760,509,382		
										교직원 급여	403,607,700	53.07																																																																																																									
										교직원 제수당	17,700,000	2.32																																																																																																									
										기타 인건비	800,000	0.11																																																																																																									
										국민건강보험료	14,963,718	1.97																																																																																																									
										장기요양보험료	1,937,801	0.25																																																																																																									
										국민연금보험료	18,994,847	2.50																																																																																																									
										고용보험료	3,342,054	0.44																																																																																																									
										산재보험료	2,933,580	0.3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5,175,642	4.63																																																																																																																		
	소 계			499,455,342	65.68																																																																																																																
	출	원	가	②	운	영	비		『2024년 보육사업안내』 운영비 기준	수용비 및 수수료	23,015,480	3.0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92,860	1.59	복리후생비	8,830,000	1.16	업무추진비	5,846,000	0.77	소 계			49,784,340	6.54		사	업	비	③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보육활동비	116,573,700	15.33	수익자 부담경비	62,623,000	8.23	재산 조성비	32,073,000	4.22	소 계			211,269,700	27.78		지출원가 합계(㉠=㉠+㉡+㉢)			760,509,382	100		수입원가			0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			0			위탁비용(㉠-㉡)			760,509,382																																												
										수용비 및 수수료	23,015,480	3.0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92,860	1.59																																																																																																										
복리후생비										8,830,000	1.16																																																																																																										
업무추진비										5,846,000	0.77																																																																																																										
소 계			49,784,340	6.54																																																																																																																	
사	업	비	③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보육활동비	116,573,700	15.33	수익자 부담경비	62,623,000	8.23	재산 조성비	32,073,000	4.22	소 계			211,269,700	27.78		지출원가 합계(㉠=㉠+㉡+㉢)			760,509,382	100		수입원가			0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			0			위탁비용(㉠-㉡)			760,509,382																																																																								
									보육활동비	116,573,700	15.33																																																																																																										
									수익자 부담경비	62,623,000	8.23																																																																																																										
									재산 조성비	32,073,000	4.22																																																																																																										
소 계			211,269,700	27.78																																																																																																																	
지출원가 합계(㉠=㉠+㉡+㉢)			760,509,382	100																																																																																																																	
수입원가			0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			0																																																																																																																		
위탁비용(㉠-㉡)			760,509,382																																																																																																																		

② 연화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3층)
- 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06㎡
- 지원시설 : 보육실 7개, 조리실 1개 등
- 위치도



위치

시설 현황 사진

- 민간위탁기간 : 2025. 9. 23. ~ 2030. 9. 22.(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100,020천원 [국30%, 시49%, 구21%]
 - 인건비 785,336천원/ 운영비 70,205천원/ 사업비 244,479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교직원 급여	616,941,800	56.08	『2024년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교직원 제수당	39,710,000	3.61		
		기타 인건비	3,747,600	0.34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23,698,467	2.15		
		장기요양보험료	3,036,577	0.28		
		국민연금보험료	30,015,331	2.73		
		고용보험료	8,421,354	0.77		
		산재보험료	4,644,373	0.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5,120,984	5.01		
소 계		785,336,486	71.39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②	수용비 및 수수료	27,794,861	2.53	『2024년 보육사업안내』 운영비 기준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210,000	2.20	
		복리후생비	6,320,000	0.57	
		업무추진비	11,880,000	1.08	
		소계	70,204,861	6.38	
사업비	③	보육활동비	116,665,000	10.61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사업비	수익자 부담경비	95,614,000	8.69	
		재산 조성비	32,200,000	2.93	
		소계	244,479,000	22.23	
지출원가 합계(㉑+㉒+㉓)		1,100,020,347	100		
수입원가		0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㉔)		0			
위탁비용(㉑-㉔)		1,100,020,347			

③ 청마을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대청복지관 내 1층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251㎡
- 지원시설 : 보육실 5개, 조리실 1개 등
- 위치도



위치

시설 현황 사진

- 민간위탁기간 : 2025. 9. 23. ~ 2030. 9. 22.(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684,425천원 [국30%, 시49%, 구21%]

· 인건비 511,334천원/ 운영비 39,197천원/ 사업비 133,894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교직원 급여	406,454,830	59.39	『2024년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교직원 제수당	23,000,000	3.36		
		기타 인건비	2,061,180	0.30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15,126,879		2.21
			장기요양보험료	1,958,931		0.29
			국민연금보험료	19,476,668		2.85
			고용보험료	4,411,567		0.64
		산재보험료	2,776,425	0.4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6,067,903	5.27			
	소 계	511,334,383	74.71			
	②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1,277,000	3.11	『2024년 보육사업안내』 운영비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330,000	1.21		
		복리후생비	3,900,000	0.57		
		업무추진비	5,690,000	0.83		
소 계	39,197,000	5.72				
③ 사업비	보육활동비	86,815,600	12.68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수익자 부담경비	33,710,200	4.93			
	반환금	1,068,599	0.16			
	재산 조성비	12,300,000	1.80			
소 계	133,894,399	19.57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684,425,782	100			
수입원가		-	-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B)		-	-			
위탁비용(A-B)		684,425,782				

④ 포레스트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4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내)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541㎡

○ 지원시설 : 보육실 6개, 조리실 1개 등

○ 위치 도



위치

시설 현황 사진

- 민간위탁기간 : 2025. 10. 1. ~ 2030. 9. 30.(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869,060천원 [국30%, 시49%, 구21%]
 - 인건비 647,418천원/ 운영비 53,531천원/ 사업비 168,111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건비	교직원 급여	493,330,200	56.77	『2024년 보육사업안내』 인건비 기준			
		교직원 제수당	46,320,000	5.33				
		기타 인건비	6,500,000	0.75				
		법 정 부 담 금	국민건강보험료	19,130,600		2.20		
			장기요양보험료	2,450,630		0.28		
			국민연금보험료	24,284,259		2.79		
			고용보험료	6,280,728		0.72		
			산재보험료	4,150,742		0.48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44,970,850	5.17	
				소 계		647,418,009	74.49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지출원가	②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3,452,800	2.70	『2024년 보육사업안내』 운영비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577,000	1.68	
		복리후생비	7,452,000	0.86	
		업무추진비	8,050,000	0.93	
		소 계	53,531,800	6.17	
사업비	③ 사업비	보육활동비	119,251,000	13.72	『2024년 보육사업안내』 사업비 기준
		수익자부담경비	36,660,000	4.22	
		재산조성비	12,200,000	1.40	
		소 계	168,111,000	19.34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869,060,809	100		
수입원가		-	-	해당없음	
수입원가 합계(B)		-	-		
위탁비용(A-B)		869,060,809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p>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p>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임명·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해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중략...)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 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작성자 : 보육지원과 보육관리팀 사회복지7급 정혜미 (☎ 3423-5823)